

1996. 11. 07 정관 제정

2013. 10. 13 정관 개정

사천읍 교회 정관



사 천 읍 교 회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1장	총 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목사 및 교역자
제5장	제직의 선거 및 임명
제6장	장로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8장	일반 행정관리와 행정실, 관리 유급 직원
제9장	교회 조직
제10장	재정관리
제11장	감사
제12장	자산과 계약
제13장	상벌
제14장	부설기관 및 법인
제15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교회 명칭]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천읍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대표자 및 소재지]

본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된다.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227 (화암리 426번지)에 소재 한다.

제3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에 소속한다.

제4조 [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및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도록 한다. 특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도들이 함께 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케 한다.

제5조 [신앙지도원리]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장로회 교리를 기본 교리로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회 헌법과 12신조 및 대소 요리문답을 신앙의 지도 원리로 한다.

제6조 [교회 정관 제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정한 헌법에 따라 운영한다.
2. 이 정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교회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7조 [정관 효력]

본 정관의 효력은 공동의회 의결 후 효력을 발휘하며 본 정관에 명시된 것은 본 정관을 따르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 권징, 시행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교인

제8조 [교인의 정의 및 자격]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인이라 부른다.

제9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0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십일조 이상의 헌금생활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15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6조 [교회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 ③ 해외선교사

제17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직무는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68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직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직무할 수 있다.

제4장 목사 및 교역자

제19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0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1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직무하는 목사다. 직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직무할 수 있다.

4.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제22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최초 청빙 시부터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결의,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선된 목사를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 ② 청빙위원회 구성은 제직회에서 추천하여 조직하며 항존 직중 장로 4명, 집사 3명, 권사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시 제직회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더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제직회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되지 못 할 경우 연임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④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3조 [담임 목사의 위임]

목사의 위임은 담임목사로 청빙 3년 임기후 당회의 결의 및 제직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청빙 한다.

- 단 사정에 따라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4조 [담임(위임)목사의 역할]

1.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쳐 반듯한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귀를 알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성도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견책하여야 한다.
4.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5. 교회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6.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 교훈하는 일을 한다.

제25조 [부목사]

1. 본 교회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목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목사를 둘 수 있다.

2.부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유효투표수 과반의 동의로 위임목사가 청원 한다.

제26조 [부목사의 직무]

- 1.해당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 2.해당 분야를 책임 맡아 연구하고 지도하며 소속부서의 교역자 및 부서장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3.부목사의 목회영역 및 담당분야는 담임(위임)목사가 결정한다.

제27조 [목사의 정년 및 임기]

- 1.목사의 정년은 68세 로 한다.
- 2.담임목사의 첫 임기는 노회에서 청빙을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 3.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종료 일자를 그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 4.담임목사 또는 위임목사 청빙시 교회정관 내용에 동의하는 분을 청빙 한다.
- 5.담임목사 유고시는 선임 부(전담)목사가 담임목사 청빙 시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의 결정은 당 교회 부임 순으로 한다.
- 9.담임(위임)목사 퇴직시 일정 전별금 외에 당회와 제직회 에서 결정한 위로금을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 10.전임 전도사의 경우 임기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임직 후 부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나, 임기는 최초 임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8조 [목사의 시무사임과 권고사임]

- 1.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 3.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과반의 찬성과 공동의회 과반의 결의에 의해 권고 사임케 한다.

제29조 [목사의 휴무와 지원]

- 1.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③ 신체·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임이 결의된 담임(위임)목사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유급 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5장 제직의 선거 및 임명

제30조 [제직의 임직]

장로, 집사, 권사는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임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선거관리]

본 교회에서의 각종 선거 및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청빙/인선(선거) 위원회를 둔다.

제6장 장로

제32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34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35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과반의 찬성과 공동의회 과반의 결의에 의해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7조 [원로 장로]

1. 원로 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직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 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38조 [은퇴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제39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0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41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 등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제4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제43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44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제45조 [집사,권사의 선택 및 투표]

1. 집사, 권사의 선출은 당회에서 선출할 인원의 수를 정하여 1주일 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수 과반을 얻은 자.
2. 집사, 권사의 선택 투표는 1회에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3. 정한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1년 이내에는 재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집사,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47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과반의 찬성과 공동의회 과반의 결의에 의해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8조 [은퇴집사, 은퇴 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9조 [서리 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제50조 [타 교회에서의 전입 등록교인]

1.서리집사의 임명: 타 교회에서 이주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1년 이상 출석하고 정상적 신앙생활을 한자는 이명 증서를 해오거나 세례교인임을 증명 할 만 한 증거가 확실하면 당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임명할 수 있다

2.항존직: 타 교회에서 이주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으로 피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교회에 이명 온지 3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3.이명증서 없이 세례교인으로 등록후 장로는 7년, 집사, 권사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등록일 기준)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1조 [협동직]

1.타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안수를 받고 시무하던 교인이 본 교회에 이명증서 접수한 때로 기준하여 3년 이상 출석한 교인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2.협동직 항존 직분 자는 해당직(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장 일반 행정관리와 행정실, 관리 유급 직원

제52조 [행정실의 조직과 기능]

1.행정실은 교회행정과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일반 행정업무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둘 수 있다.

2.당회장은 행정 실에 필요한 부서를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 [행정실, 관리 유급 직원의 정년과 임명]

1.직원의 정년은 남, 여 60세로 한다.

- 단 당회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연장 할 수 있다.

2.신규 행정실 직원은 당회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심사와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시무장로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 직원이 될 경우에는 휴무 하여야 한다. 단,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유급직원이 될 수 있다.

4.직원의 첫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한다.

5.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종료 일자는 그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제54조 [행정실, 관리 유급 직원의 직무]

1.사무간사: 주보 관계, 문서 수발 관계, 통신(통화) 관계, 교역자 및 교우전언, 통신수발, 연락, 교적부 관계, 예배순서 연락 및 게시, 주보 수집 및 배부 등 행정사무실의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2.관리집사- 교회의 청결 정돈과 미화 및 건물관리, 차량 운행을 담당한다.

제55조 [직원의 근무, 휴무 퇴직]

- 1.교역자 및 유급직원이 그 직을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원을 당회장에게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교회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매 월요일 및 국정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한다.

제9장 교 회 조 직

제56조 [원리]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개혁 장로회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주 안에서 높음과 낮음과 귀함과 천함이 없으며, 오직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한시적으로 그 다스림과 섬김의 기능을 위임받는 것이다.

제57조 [교회조직]

- 1.본 교회는 합리적인 교회운동을 위하여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를 둔다.
- 2.본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교회활동과 교역자들의 목회활동에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공동의회

제58조 [공동의회 구성]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59조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

- 1.공동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하며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 2.공동의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대리 당회장을 요청하고,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하며, 당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소속노회에 요청하여 임시 공동의회 의장을 파송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3.공동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공동의회 의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제60조 [공동의회 운영]

- 1.정기회의는 매년1월에 소집하여 전 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안 확정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한다.
- 2.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① 당회가 소집을 요청할 때
 -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정안건을 명시한 경우에 당회 결의가 없어도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 3.공동의회는 당회 과반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 단 2항 2호,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공동의회 의사, 장소 및 안건은 1주일 전에 후보를 통해 광고한다.

제61조 [공동의회 의결사항]

공동의회는 사천읍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른 어떠한 기관의 결정사항 보다 우선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과 같다.

- 1.당회가 제시한 사항
- 2.위임목사의 청빙
- 3.장로, 집사, 권사의 선출
- 4.각종 사역자의 해임
- 5.예산 및 결산
- 6.법인의 설치
- 7.상회가 지시한 사항
- 8.총회 및 노회 가입과 탈퇴
- 9.정관의 개정
- 10.기타 본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62조 [공동의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 1.공동의회 개회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 2.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 3.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투표수 과반의 찬성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2/3 찬성으로 한다.
 - ① 담임(위임)목사 청빙
 - ② 시무장로의 선출
 - ③ 법인의 설치

제2절 제직회

제63조 [제직회 구성]

본 교회 제직회는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하고 은퇴 향존 직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64조 [제직회의 기능]

제직회는 실질적으로 재정과 사업진행의 중심이 된다.

제65조 [제직회 회장]

- 1.제직회의 회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하며, 제직회를 주재한다.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 2.제직회장이 유고시에는 대리 당회장을 요청하고,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여 제직회를 진행하며, 당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소속노회에 요청하여 임시제직회장을 파송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3.제직회에 상정된 안건이 제직회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제직회 의결사항]

제직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 2.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 3.공동의회 소집 청원
- 4.당회가 요청한 사항
- 5.교회 재산(부동산, 동산) 매입 및 처분, 자금 차입 및 변제

- 6.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현금 취급
- 7.정관 개정 발의
- 8.기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7조 [제직회 운영]

- 1.정기회의는 격월 첫째 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2.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 ①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 ②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 경우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직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③제직회의 소집은 일주일전에 예배시간에 광고한다.
 - ④제직회 안건 내용은 반드시 유인물로 배포하며 보조적으로 영상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⑤제직 회원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목적이 정당할때 제직회 서기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8조 [제직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 1.제직회 개회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 2.제직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2/3 찬성으로 한다.
 - ① 정관 개정
 - ② 교회 재산(부동산, 동산) 매입 및 처분
 - ③ 자금 차입 및 변제

제69조 [제직회 서기 및 회계]

- 1.제직회의 서기와 회계(금전, 장부)는 매 회계연도 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선임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서기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을 포함한 회무 진행을 돕는다.
 - 제직회 서기는 속기 회의록을 정서하여 속기록과 함께 당회장의 확인을 득한 후 보관한다.
- 3.서기와 회계의 업무 보조를 위해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제70조 [제직회 부서]

- 1.본 교회 제직회에는 교회 운영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 2.제직회의 부서는 관련부서의 발의와 당회 과반의 결의 및 제직회 출석 과반의 동의를 거쳐 신설, 통합, 폐지 할 수 있다.

제71조 [부서장의 임명과 임기]

- 1.제직회 부서장은 교회 봉사 및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회 과반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2.제직회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단 당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제72조 [안건의 처리]

- 1.제직회의 중요안건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직회 개최 공지 전에 제직회 서기를 경유하여 제직회장에게 제출한다.
- 2.제직회 서기는 제직회 회의록을 1주내에 사천읍교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교인의 요청시 공고 할 수 있다.
 - 단, 대외 비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직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생략 할 수 있다

제3절 당회

제73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2.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3.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성도들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4.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5.당회는 각종 헌금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6.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7.당회는 범죄한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권징 한다.
- 8.당회는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 한다.
- 9.기타 (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74조 [당회의 구성]

- 1.당회는 **담임목사**, 전담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를 당 회원으로 구성하며, 은퇴당회원도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언권회원의 의결권은 없다.
- 2.당회에는 회장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5조 [당회장 및 서기]

- 1.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 2.당회장이 유고시에는 대리 당회장을 지정하고, 결원 시에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 받아 당회를 진행한다.
- 3.당회에 상정된 안건이 당회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 4.당회서기는 당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서기는 매년 회계연도 말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76조 [당회의 소집]

- 1.당회는 정기 당회와 임시 당회로 구분한다.
- 2.정기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임시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당회 과반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 ④ 제직회 요청 의결안건이 있을 때
- 4.당회 소집 시 당회 서기는 언권 회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5.당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회에 불참 할 수 없으며 불참시 사전에 당회 서기에게 불참통보 및 사전 공지된 안건에 대한 위임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6.당회는 매 반기에 1회 이상 제직회 부서장까지 참석하는 부서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교회현안을 청취 하여 교회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제77조 [당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 1.당회 개회 성수는 당 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한다.

- 2.당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3.정기 또는 임시 당회가 개최되지 못할시 그 사유를 즉시 교회게시판에 공지 또는 다음 예배 광고시 공지 하여야 한다.
- 4.제직회 및 기타 다른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당회가 개최되지 못 할 때는 그 사유를 상기 3항에서와 같이 공지 하여야 한다.

제78조 [당회의 회의록 공개 및 방청]

- 1.당회의 회의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정서하여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한다.
- 2.교인이 당회록 열람을 원할시 는 열람사유를 1주일 전에 당회장에게 요청하여 그 목적이 정당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
- 3.당회는 당회 개최 1주일 전에 방청을 신청한 교인에게는 방청을 허락 할 수 있다.
 - 단 방청인원은 당회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당회에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교회의 비밀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처리 사항은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9조 [안건의 처리]

- 1.당회의 상정 안건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 개최 1주일 전에 당회 서기가 참석자에게 공지 한다.
- 2.당회 서기는 당회 의 상정안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제80조 [위원회 임명]

- 1.본 교회는 교회운영을 각 기능과 목적에 맞게 기획과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부서를 둔다.
- 2.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장,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항존직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얻어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타부서의 부서장과 겸직 할 수 있다.
- 3.각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할 때는 제직회의 발의와 당회의 결의로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 4.각 부서 소관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각 위원장 주재 하에 해당 부서장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81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의 결정에 따르며 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재정 위원회
 - 예산/결산 심의, 현금 계수 및 지출, 감사 운영
- 2) 예배 위원회
 - 교회 예배, 성례, 안내, 찬양 운영
- 3) 선교 위원회
 - 국내,외 선교 및 기타 선교 운영
- 4) 전도 위원회
 - 영성, 전도, 기타 전도 운영
- 5) 교육 위원회
 - 교회 학교 운영
- 6) 사회 위원회

- 사회, 봉사, 문화, 장학, 기타 사회 운영
- 7) 차량관리 위원회
 - 차량 관리, 운행, 안내 운영
- 8) 관리 위원회
 - 자산, 관리행정, 시설, 전기, 소방, 조경, 주방 운영
- 9) 친교 위원회
 - 친교, 축의/조의, 사서, 심방, 새가족, 기타 친교 운영
- 10) 청빙/인선(선거) 위원회
 - 담임목사 또는 부교역자, 전도사 청빙 관련 업무, 향존직 선거 업무
- 11) 기획/비전 위원회
 - 교회 중장기 비전, 계획 수립 및 정관 개정 운영, 교회 내 각종 현안 조정 업무

제10장 재정관리

제82조 [재정관장]

본 교회 모든 재정은 재정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는 당회 원과 안수 집사로 구성한다. 단, 서리집사도 재정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제83조 [재정관리]

- 1.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 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 2.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 사회봉사, 교육 및 교회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잉여 자금은 선교 및 구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재정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재정위원회는 모든 수입금을 “사천읍교회”의 명의로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84조 [예산편성 및 절차]

- 1.제직회 각 부서와 기관, 단체가 익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재정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요구서를 받은 재정위원회는 당해년도 교회의 세입 및 세출사항을 감안하여 12월까지 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 편성한다.

제85조 [예산 및 결산]

- 1.본 교회의 예산 및 결산 관리를 위해 재정위원회에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당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 2.본 교회의 세입, 세출의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심의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 3.본 교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은 매년 12월말에 재정위원회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12월 당회의 심의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단,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86조 [예산경정]

예산의 초과 지출이 발생하거나 경정이 필요할 시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7조 [회계구분]

본 교회의 수익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며 일반회계는 교회의 경상비를 관장하고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관장한다.

제88조 [예산집행절차]

1.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득하고 지출한다.
3. 100만원 이상(예산 내/외 포함)의 지출 시는 제직회의 사전 결의를 득하고 지출한다. 단, 월정액 경비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제외한다.
4. 교회의 긴급한 시설/수리공사 및 지출 사항이 발생 시 당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출할 수 있다.
5. 상기 3, 4항에 대해 필요 시 사후 제직회 결의를 받을 수 있다.
6. 지출 결의된 재정의 지출실무와 은행거래는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89조 [회계보고]

교회의 재정보고는 수입과 지출 변동사항을 정기 제직회에 월계, 누계가 계상된 계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 [회계연도]

본 교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감 사

제91조 [행정, 관리 감사]

본 교회에 속한 각 부서 및 기관은 12월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92조 [회계 감사]

교회의 모든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년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감사가 보고한다.

제93조 [특별 감사]

1. 본 교회는 교회에서 정한 정기 감사 외에 특별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직회의 결의로 특별감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 및 활동기한은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감사에서 조사된 결과는 정기 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감사 조직이나 대상은 특별 감사의 결과에 따라 제직회에서 결의된 결정을 따라야 하며 결과에 불복 시 제직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제직회의 다음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특별감사의 결과후 처리대상 안건은 반드시 제직회 내용을 참고하여 교회내 처리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제94조 [외부 감사 및 조치]

1.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감사는 해당기관에 대해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음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자산 과 계약

제95조 [취득과 처분]

- 1.교회의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유동자산(자동차 및 50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과 교회자산등록 대상 비품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 2.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취득은 “사천읍교회”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 3.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 4.교회에서 발급되는 확인 증명은 담임목사 명의로 발급한다. (단 법에서 정한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증명의 발급은 사전에 당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96조 [시설물의 사용]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므로 정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1.상회나 그 산하 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교회당을 사용코자 할 때와 외부종교행사 및 선교행사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교회당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 2.전항의 경우 외에는 담임목사의 결재로 허락할 수 있다.

제97조 [강단의 사용]

본당 강단(설교대)의 사용은 사천읍교회 직분 자에 한하여 사용하며 단 담임목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제98조 [비품의 사용]

- 1.교회의 차량 또는 비품을 사용코자 할 때는 관리부장을 경유하여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단, 사무용 비품은 제외된다).
- 2.교회의 차량 및 비품을 분실, 기타범죄금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 또는 사용 기관 단체에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99조 [계약 방법]

- 1.1건당 50만원~100만원 미만의 시설공사, 수리공사, 물품의 매입, 처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 또는 시방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2.1건당 100만원~1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2곳 이상의 견적서 또는 시방서를 첨부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3.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2곳 이상의 경쟁에 의한 수의 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며 금액이 1억 원이 초과되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4.본 조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계약규칙, 또는 일반 통상계약 방법에 준 한다.

제13장 상 별

제100조 [포상 및 기념]

- 1.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나 혹은 재외인사가 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심사하여 담임목사가 포상할 수 있다.
- 2.목사, 장로가 정년퇴임, 또는 목사, 장로가 시무 사임시 시무 기간 동안 교회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시 감사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3.안수집사, 권사, 전도사가 정년 혹은 퇴임 시에는 감사패와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1조 [치리]

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그 신행이 비 성경적이거나 건덕에 방해되는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당회가 조사하여 치리한다.

- 1.교인에게 주는 벌은 권계, 근신,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 2.입교 인에게 주는 벌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 3.교회직원에게 주는 벌은 권계, 견책, 근신,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등이며 입교인 에게 주는 수 찬 정지와 출교를 병과할 수 있다.
- 4.당회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및 기타 회의 장소에서 발악, 성희모욕, 소란 등의 범죄자 와 본인이 범죄 사실을 자복한 자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즉석 결의하고 증거 조사 없이 유죄 판결할 수 있다.
- 5.권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유기 및 무기로 시벌할 수 있다.
- 6.유기시벌을 받은 자가 그 시벌이 만료되면 교회 석상이나 또는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벌선 언을 하며 치리회 기록으로 남긴다.
- 7.유기 및 무기시벌을 받은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원심 치리회는 재판의 재개 없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14장 부설기관 및 법인

제102조 [법인 등의 설치]

본 교회는 필요시 어린이집 등과 같은 부설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 및 법인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유효투표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한다.

제15장 부 칙

제103조 [정관 준수]

본 교회의 교인은 이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4조 [정관 개정]

- 1.정관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본 1부를 공람하여야 한다.
- 2.정관 개정안은 기획/비전 위원회(필요시 임시 정관 개정위원회 구성)에서 작성 및 수의한다.
- 3.정관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4.정관 개정안은 제직회 및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5.당회장은 제4항에 의하여 가결된 개정된 정관을 즉시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105조 [시행 규정]

- 1.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관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시행 규정의 제,개정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6조 [경과규정]

- 1.본 정관이 개정되기 전의 교회 회무는 종전 정관에 의한다.
- 2.본 교회 향존직중 정관 개정전 향존 임직자의 정년은(목사, 장로, 집사, 권사 시무기간) 68세로 한다.

제107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10월13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심의, 의결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며 즉시 시행된다.

이상.

[사천읍교회 정관 개정, 2013. 10. 13]

[당회원]

담임목사 : 김 세봉

부 목 사 : 장 우철

조미현

김경한

장 로 : 최 홍경

신종철

김봉춘

성한효

김 효주

왕중호

최용운

송맹호

[정관 개정 위원]

개정위원장 : 최 용운 장로

장 로 : 김 효주

안 수 집 사: 이 창호

이 진용

권 사 : 신 희숙

이 민경

서 리 집 사: 임 칠윤

정 영은